

18-19세기 농촌 금융 연구를 위한
고문서 활용의 모색
—부안김씨 우반동 문서의 사례—

2019. 5. 1.

조영준

몇 가지 질문

- 고리대 비판?
 - 장리(長利)의 "관행": 춘궁기에서 추수기까지 50%
 - 이자 부담 → 담보물(토지) 상실 → 소농 재생산 불가 → 지주제 발달
 - 법정 이자율의 제한: 조선후기 연 20%
- 실제 이자율의 추세는?
- 사채(私債)의 역할은?

주요 연구와 비판

- 조선후기 이자율 수준은 대략 50-60%, 예외적으로 20-30%
 - 최승희(1997): 규장각 등에 소장된 **고문서의 분석**
 - 홍성찬(1981): 강화도 홍씨가 장부(『長冊』)의 분석
- 기존 연구의 한계
 - 물가를 고려하지 않음: 명목이자율만 제시 (인플레이션 미반영)
 - 농촌 신용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 환곡의 대체재로서 사금융의 역할은?
- 최근 연구: 경북 예천, 전남 영암 등의 계(契) 장부 분석

경북 예천 박씨가: 계(契) 장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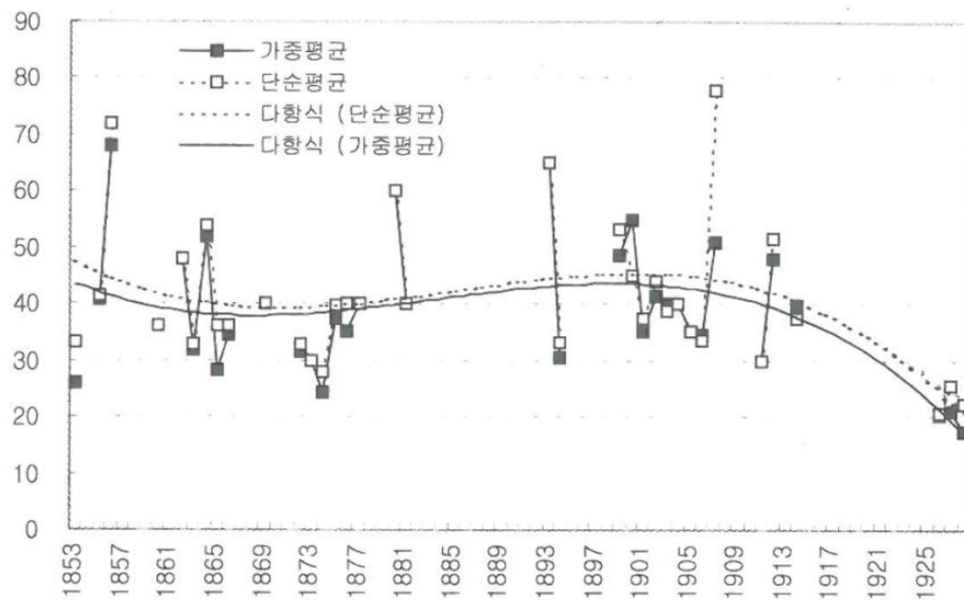


그림 8-4. 명목이자율의 추이(1853~1928)

비고: 가중평균은 대차액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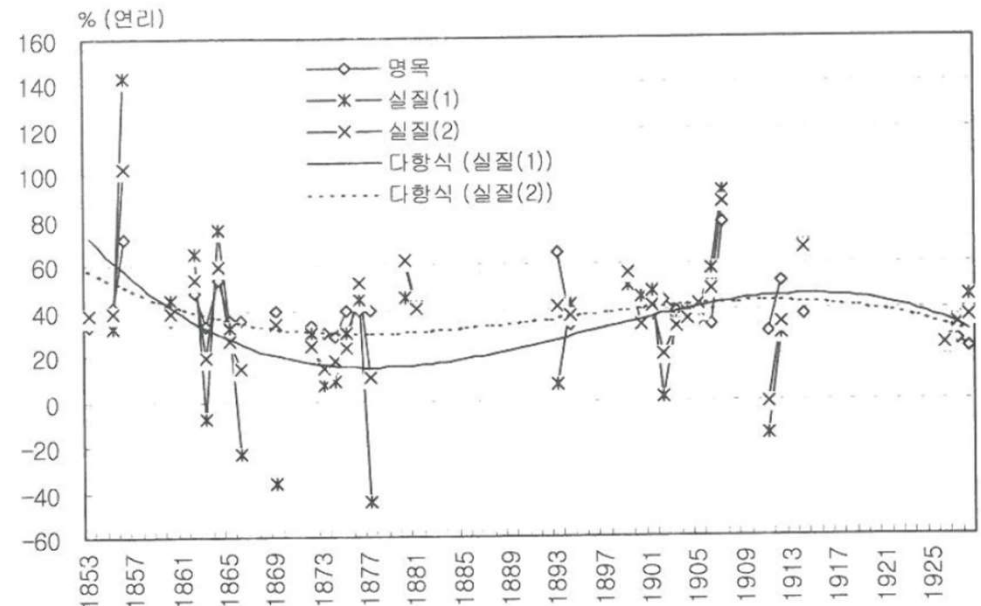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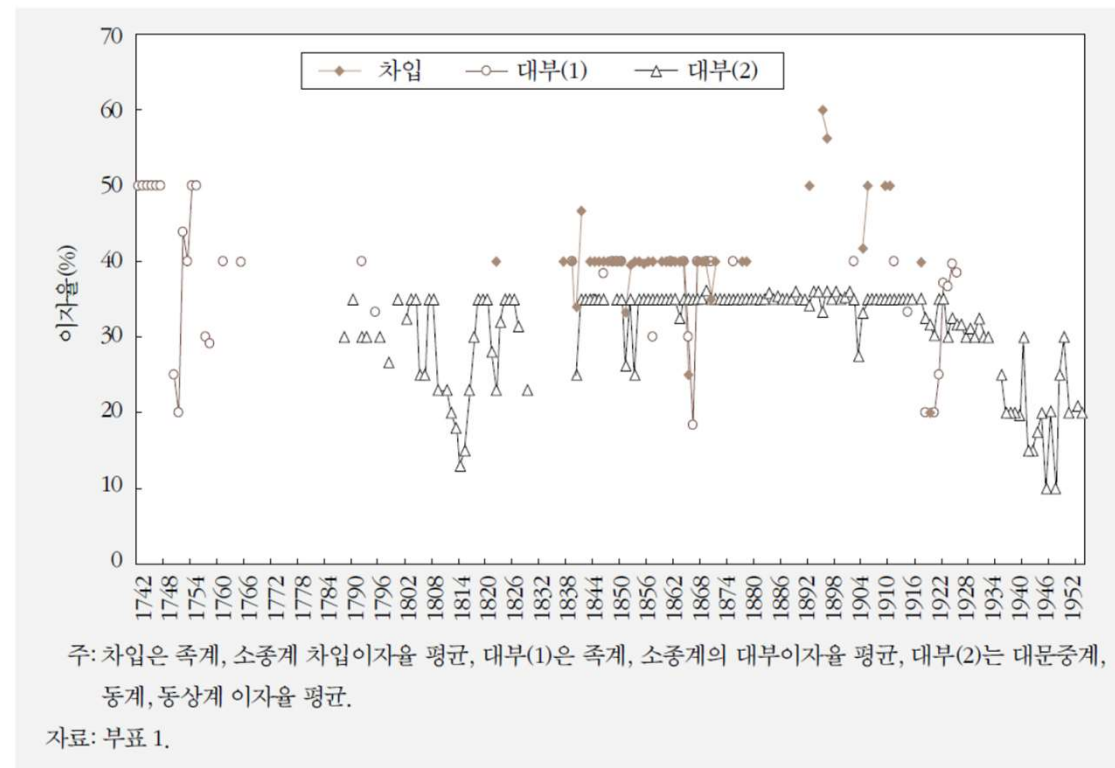
그림 8-6. 실질이자율의 추이(1853~1928)

비고: 실질이자율(1)=명목이자율-미가상승률; 실질이자율(2)는 명목이자율-물가상승률. 미가 및 물가는 제4장의 추계를 이용.

출처: 김재호(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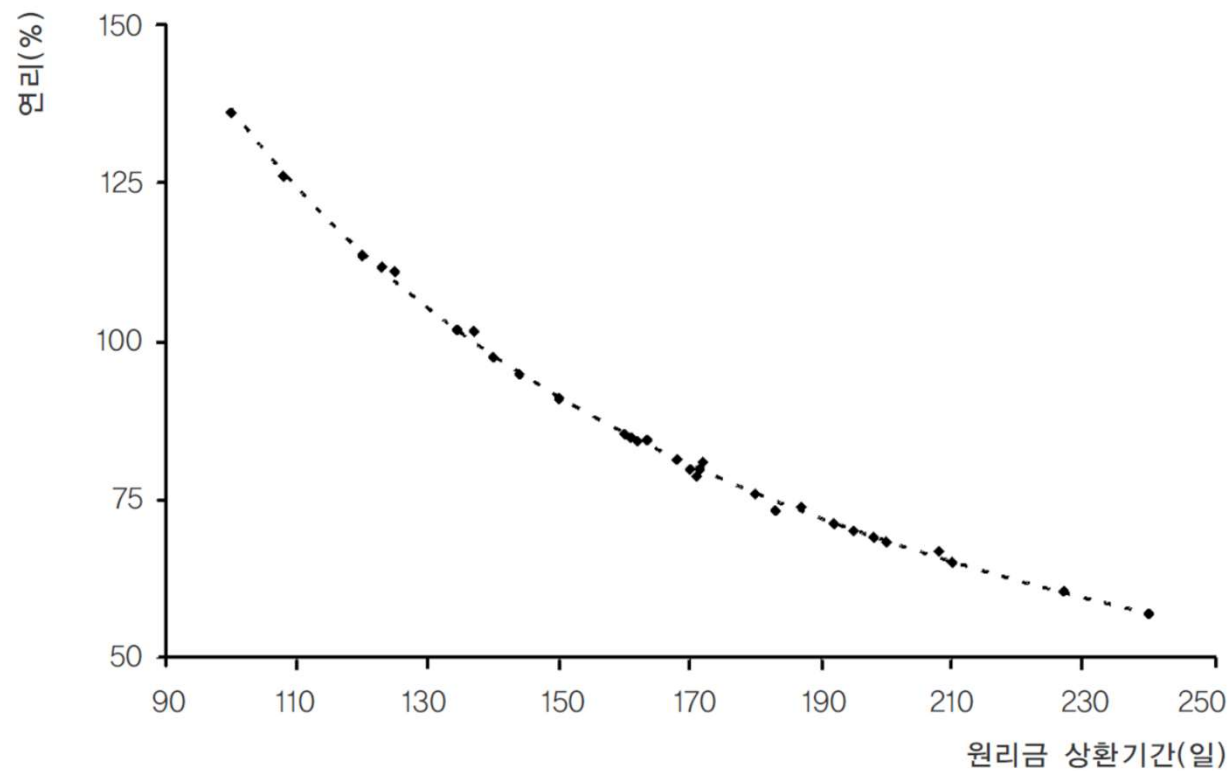
전남 영암 문씨가: 계(契) 장부 분석

그림 9 영암契 이자율 종합, 1742~1953



출처: 김재호·박기주(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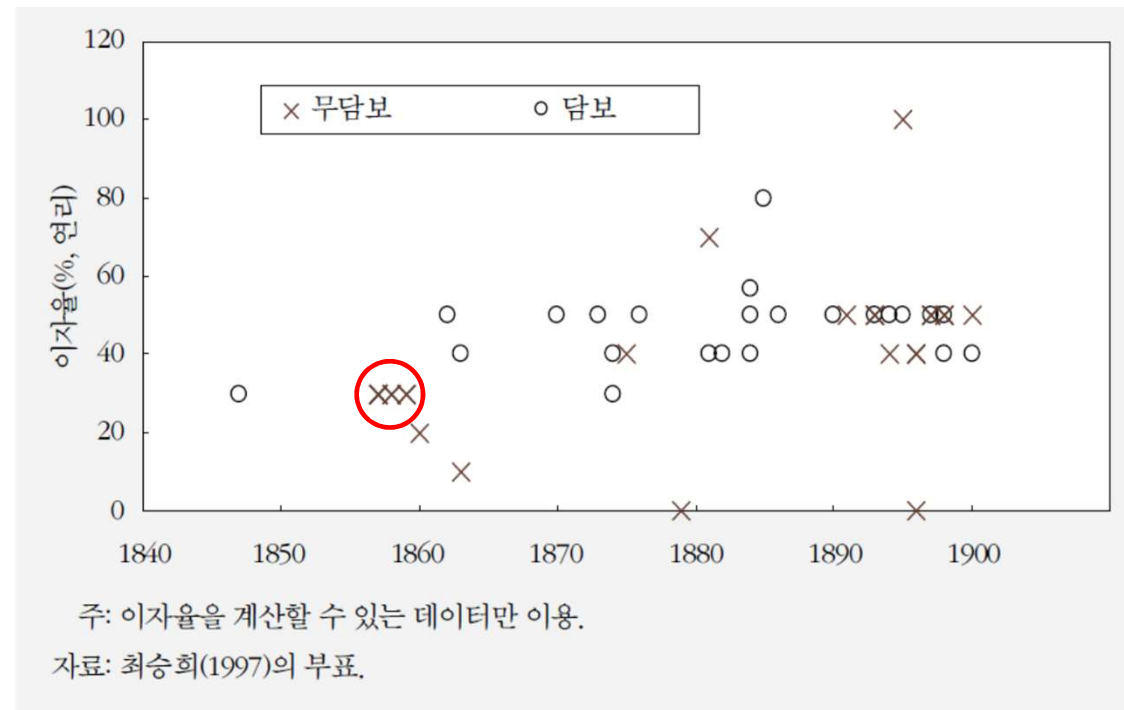
일수(日收) 이자율의 기간 구조



출처: 서울 남대문 지역 1890-1908년간의 일수 금융 거래(조영준 2010).

전국 고문서의 활용: 최승희(1997)

그림 3 대차문서상의 이자율의 추이, 1847~1900



출처: 김재호·박기주(2004)

고문서 활용의 한계와 대안

- 지역별 특성의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음
 - 금융 시장의 통합을 상정해서는 곤란할 것임
- 대부의 성격에 대해 깊이 고찰하지 않았음
 - 대부 규모, 기간 등을 금리와 결합하여 분석하는 등의 시도가 없었음
 - 대부자와 차입자의 식별 문제 (수요측과 공급측의 파악 오류)
 - 문서 기재의 특성과 소장처를 고려해야 할 것임
- 18세기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음
 - 최근 발굴된 문서의 추가 활용이 필요
 - 수기(121; 1754-1910), 수표(281; 1692-1915), 전당문기(8; 1708-1910)

부안김씨 차용문서의 “깊이 읽기”

- 수기나 수표를 통한 차용의 증빙
- 누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돈을 빌렸나?
- 그들에게 돈이 필요했던 이유
- 차용증의 반납과 효주를 통한 채무 청산의 확인
- 고생원의 실체는 돈놀이꾼?
- 빌린 돈을 실어오는 것도 만만치 않네
- 부안김씨 집안은 돈을 빌리기만 했나?
- 안 갚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
- 김생원은 김봉구의 할아버지?

차용의 증빙

- 수기(手記)·수표(手標) 일반은 각서(覺書)에 해당
 - 우반동 부안김씨 집안에는 11건이 현존
 - "완기(緩期)": 1건
 - "파묘(破墓)": 1건
 - "득용(得用)": 9건
- 경제사에서 주목하는 것은 "득용" 성격의 수표·수기
 - 대차 거래를 증빙하는 차용증(借用證)에 해당
 - 수기 1건, 수표 8건: 양자의 구별은 무의미함
 - 내용상 전당문기(典當文記)와 마찬가지로

- 부안김씨 집안에
남은 수표와 수기(9건)

발급자 (차입자)	차입 연월일	원금 (냥)	월리 (푼)	원리 합계 (냥)	상환 기한	담보 유무
김봉구 (金鳳九)	1857. 11. 5.	50	3		1858.10.29.	×
"	1857. 11. 29.	250	3		1858.9.30.	×
"	1857. 12. 22.	300	3		1858.10.29.	×
"	1857. 12. 22.	50	3		1858.10.29.	×
"	1867. 5. 9.	170	3.5		1867.12.30.	×
김인복 (金麟復)	기미년 11. 7.	20	3	27.2	경신년 10월 그믐	×
황종원 (黃鍾遠)	1858. 7. 27.	30	3		1859.10.29.	○
서명규 (徐命奎)	기미년 2. 24.	5	5		기미년 10월 그믐	○
유학 (幼學) 강성일 (姜成一)	임오년 7. 14.	4.5			계미년 7월 그믐	○

누가 누구에게 써 준 문서인가?

- 9건의 문서 모두 수취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음
 - 각종 매매문기에서 확인되는 일반적 현상과 동일
 - 이 경우, 대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을 의미
 - 결국 문서의 작성자(발급자)인 차입자만 확인됨
- 부안김씨 집안에 현존하고 있으니, 부안김씨 쪽이 대부자?
 - 황종원에 대해서는 타당한 추론
 - 김봉구나 김인복의 경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
 - 명백한 근거 없이 현존 소장처를 기준으로 대부자를 속단해서는 곤란

언제 작성된 문서인가?

- 연도가 대개 간지(干支)로 작성되어 있음
 - 황종원의 수표에서는 연호가 확인됨 → 연대 비정 가능
 - 김봉구의 수표·수기 → 생졸(生卒) 연대로 시기 추정
 - 나머지의 기미(己未)와 임오(壬午) → 확인 불가

어떤 조건으로 돈을 빌렸나?

- 원금과 이자
 - 원금: 적게는 4냥 5전, 많게는 300냥까지
 - 금리: 월 3%가 대부분인데, 월 3.5%, 월 5%도 보임
 - 원리합계가 명시된 경우도 있음
- 상환 기한
 - 대개 12개월을 만기로 함,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5개월도
 - 농촌의 일반적 장리(長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長期)
- 담보: 집문서, 밭, 나락 등 3건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 대차의 사유
 - 1건, "춘궁기를 맞아 세미를 마련해 낼 길이 없어서"
 - 8건, "긴히 쓸 데가 있어서"
- 대개 이유를 알기는 어려움
 - 매매문기와 마찬가지로 투식(套式)으로 처리됨
 - 별도의 정보를 추적해야 함

김봉구(金鳳九)의 경우

- 9건 중 5건은 김봉구가 발행한 문서
 - 1857년, 4건: 수결 대신 “상불착(喪不着)”
 - 1867년, 1건
- 상을 당했음 → 돈이 필요했음?
 - 1857년, 김봉구는 45세
 - 같은 해, 그의 아버지 김용관이 사망함
 - 그렇다면 아버지의 장례 비용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던 것일까?

1857년, 김봉구가 올린 청원서(所志)

- 김용관의 사망 및 입장(入葬) 과정에서의 갈등
 - 김용관의 사망은 5월
 - 다음 달인 윤 5월에 안장(安葬)
- 돈을 빌린 것은 11월
 - 장례를 치른 지 여섯 달 뒤
 - 장례와 차입의 연관성?

1857년의 문서 4건에 주목해 보면?

丁巳十月廿五日
右手標平山守
用云右錢拾
司以每新三分例
以用云明年十月
由云傳根之立如
是耳標子
標主金島市書
市書

丁巳十一月廿九日手記
右手記子平山守用
更以右錢貳百伍
十司以每新三分例
用云明年十月由云
由云傳根之立如
是耳標子
標主金島市書
市書

1857년의 문서 4건에 주목해 보면?

丁巳十二月廿二日
右標
左標
三
十日
標
金
索
表
書
高
生
員

丁巳十二月廿二日
右標
左標
三
十日
標
金
索
表
書
高
生
員

1857년의 문서 4건에 주목해 보면?

- 이들 문서 네 건의 공통점
 - 4건 모두 금리가 월 3푼으로 동일
 - 담보가 전혀 설정되지 않았음
 - 상환 기간이 대략 1년으로 설정되어 있음
- 그렇다면 모두 같은 사람에게 빌린 것이 아닐지?
 - 그 사람은 누구?
 - 수표 중 하나에 추기(追記)되어 있는 고생원(高生員)?

김봉구는 돈을 떼먹지 않고 모두 갚았다!

- 수표와 수기 5건이 모두 부안김씨 집안에 보관됨
 - 부안김씨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견해 (최승희 1997)
 - 부안김씨가 돈을 갚고 수표·수기를 돌려 받았다고 보는 견해 (이 발표)
- 기존 연구에서는 1857년의 문서가 효주(爻周)된 점을 간과
 - 차용증의 회수 = 청산(清算)의 증빙
 -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효주한 것으로 추정됨
 - 누구에게서 돌려받은 문서인지 참고하고자 “고생원”을 적어둬?

특이한 도장이 찍혀 있다는 공통점

- 1857년의 문서 4건에는 모두 공방(孔方)형 도장이 찍혀있음
 - 붉은 색, 검은 색이 있는데, 모두 같은 도장임
 - 찍은 위치는 원금, 금리, 상불착의 세 곳
 - 모든 도장은 "거꾸로" 뒤집어 찍었음 → 왜?



고생원은 돈놀이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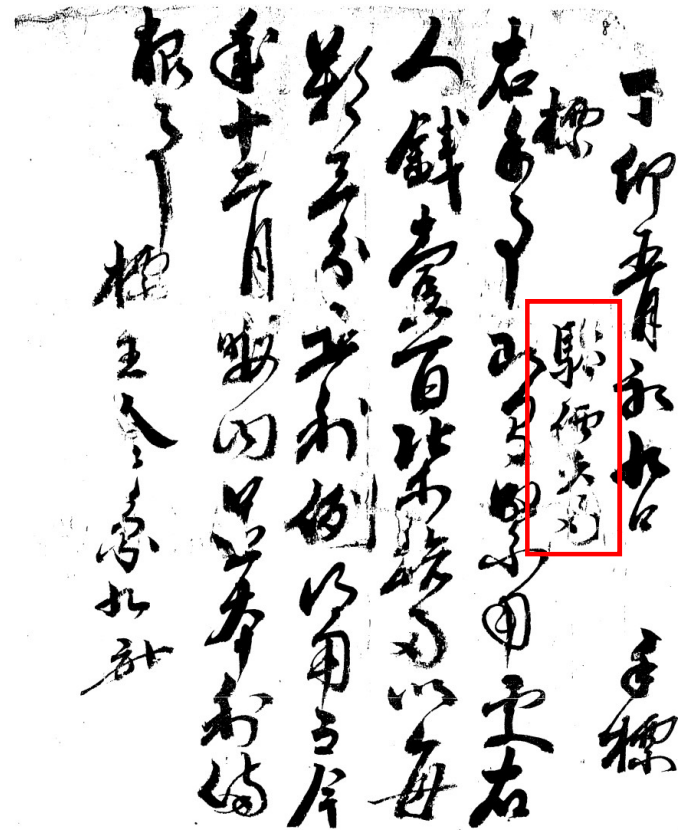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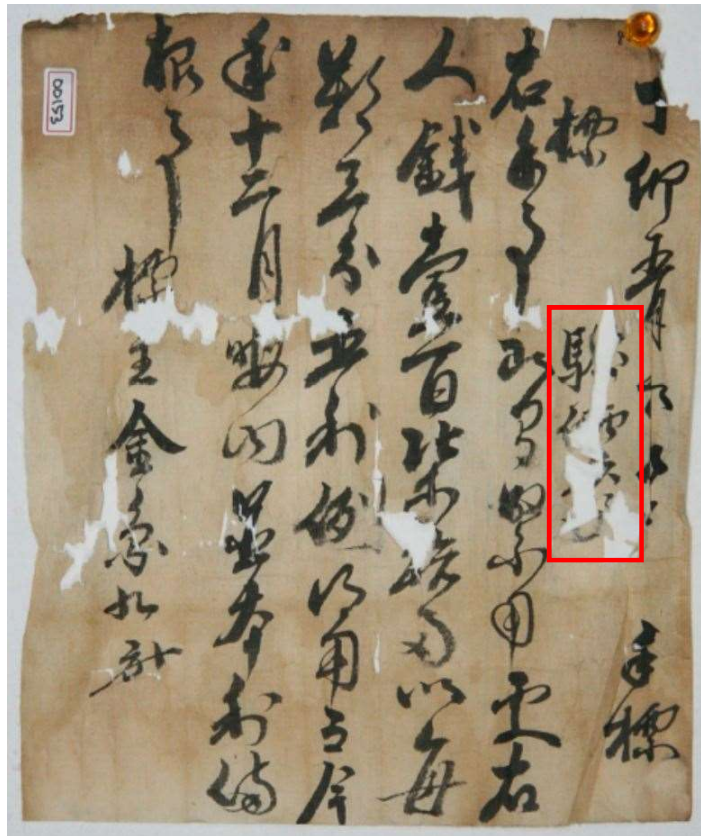
- 누구의 도장인가?
 - 김봉구의 것은 아님
 - 관인으로 보기도 어려움
 - 대금업자가 찍은 것으로 보아야 할 듯 → 객주?
- 비슷한 사례
 - 전문적인 대부업자?
 - 그렇다면 고생원의 도장?



빌린 돈을 실어오기 위해 또 돈을 지불

- 1867년 문서 1건의 특징
 - 효주도 인장도 보이지 않음
- 반면에, “태가(駄價) 6냥”이라는 내용이 추가됨
 - 170냥이라는 돈을 빌려서 집으로 싣고 오는 데 들어간 운반 비용?
 - 170냥은 상평통보 당일전 1만 7천 냥
 - 그에 상응하는 무게는 대략 63kg 정도, 또는 그 이상
 - 성인 남성 한두 명이 운반하기 어려움 → 돈을 주고 소에 싣어 옴
 - 이자를 계산해 보면, 5냥 9돈 5푼 → 태가와 비슷한 수준
 - 한 달 치 이자만큼 운송비를 지불했다는 의미

1867년 김봉구 수표





1857년에 호조(戶曹)에서 주조한 상평통보

부안김씨 집안은 차입자? 대부자?

- 차입의 사례

- 김봉구가 작성한 차용증 5건
- 얼마나 빌려 썼는지 보여줌
- 모두 갚았음도 확인됨 ←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단기에 해소
- 김봉구의 가계(家計)가 그리 부실하지 않았음을 의미
- 담보가 설정되지 않음 → 신용에 기반한 금융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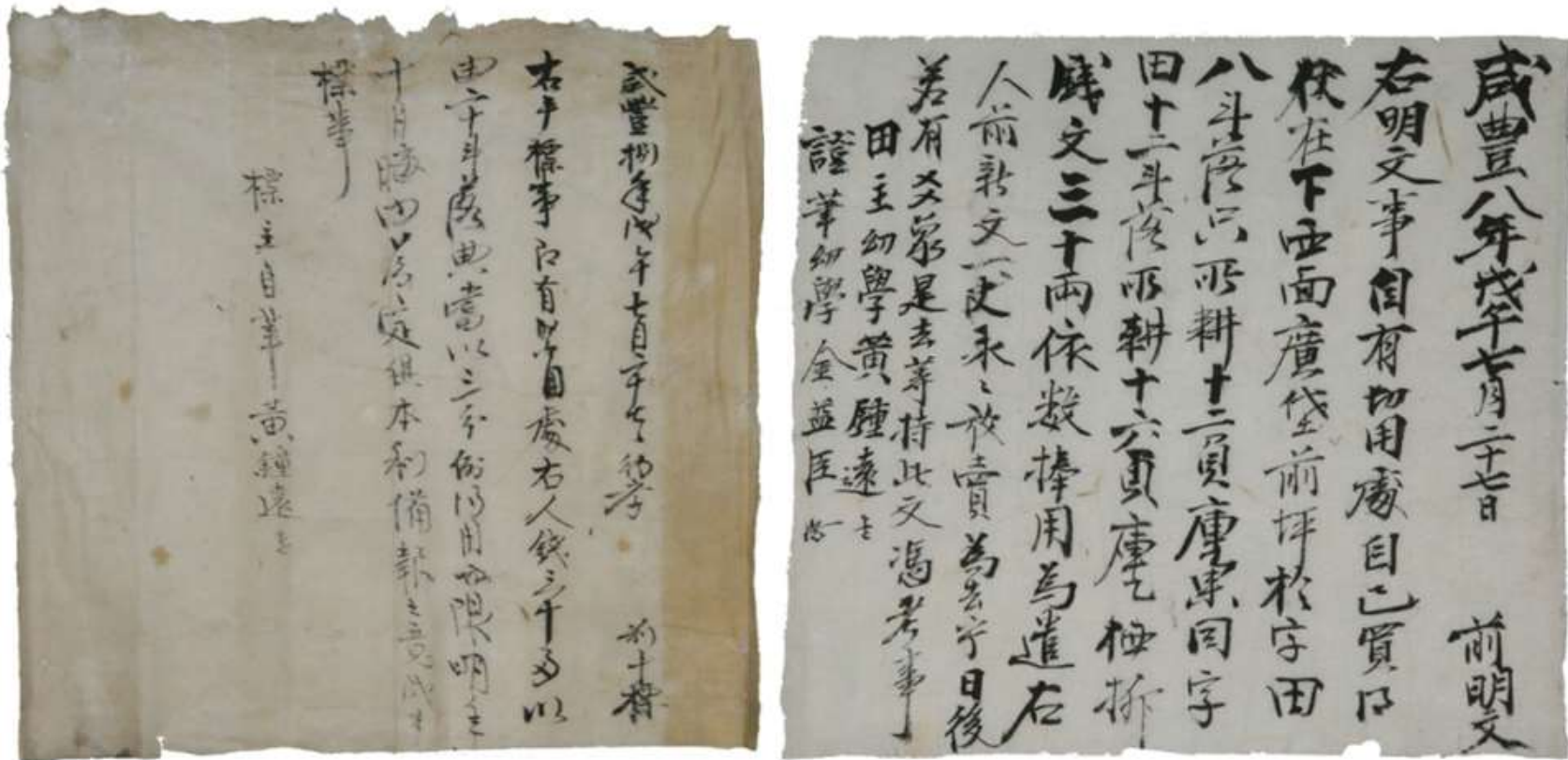
- 대부의 사례

- 김인복의 1건 → 같은 부안김씨라면? → 신용 거래가 가능했을 것임
- 황종원, 서명규, 강성일의 3건 → 모두 물적 담보가 설정됨

황종원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

- 1858년 7월 27일
 - 이날 황종원이 남긴 2건의 문서
 - 수표 1장과 토지매매문기 1장
 - 20마지기의 밭과 30냥의 돈이라는 공통된 내용
- 황종원에게는 돈이 필요했음
 - 두 가지 문서를 발행하여 60냥을 획득
 - 그런데 황종원은 돈을 갚지 못함 ← 아직도 두 문서가 부안김씨 집안에
 - 그렇다면 담보로 잡았던 밭은 부안김씨의 소유가 되었을 것임

황종원이 작성한 문서 2건



같은 날자에 발행된 황종원의 수표(좌)와 토지매매문기(우)

차입 및 대부 → “이중적” 금융시장

- 김봉구가 고생원에게서 돈을 빌린 경우
 - 전문적인 대금업자에게서 대출받음
 - 고액을 대출하면서도 무담보의 신용거래
 - 모두 상환하여 청산이 완료됨
- 황종원, 서명규, 강성일이 부안김씨에게서 돈을 빌린 경우
 - 소액의 자금을 여러 사람에게 빌려 줌
 - 담보를 설정하여 원금 손실의 위험에 대처하려 함
 - 부안김씨 집안이 본래 돈놀이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시사함
 - 돈을 갚지 못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이 부안김씨 집안으로 이전된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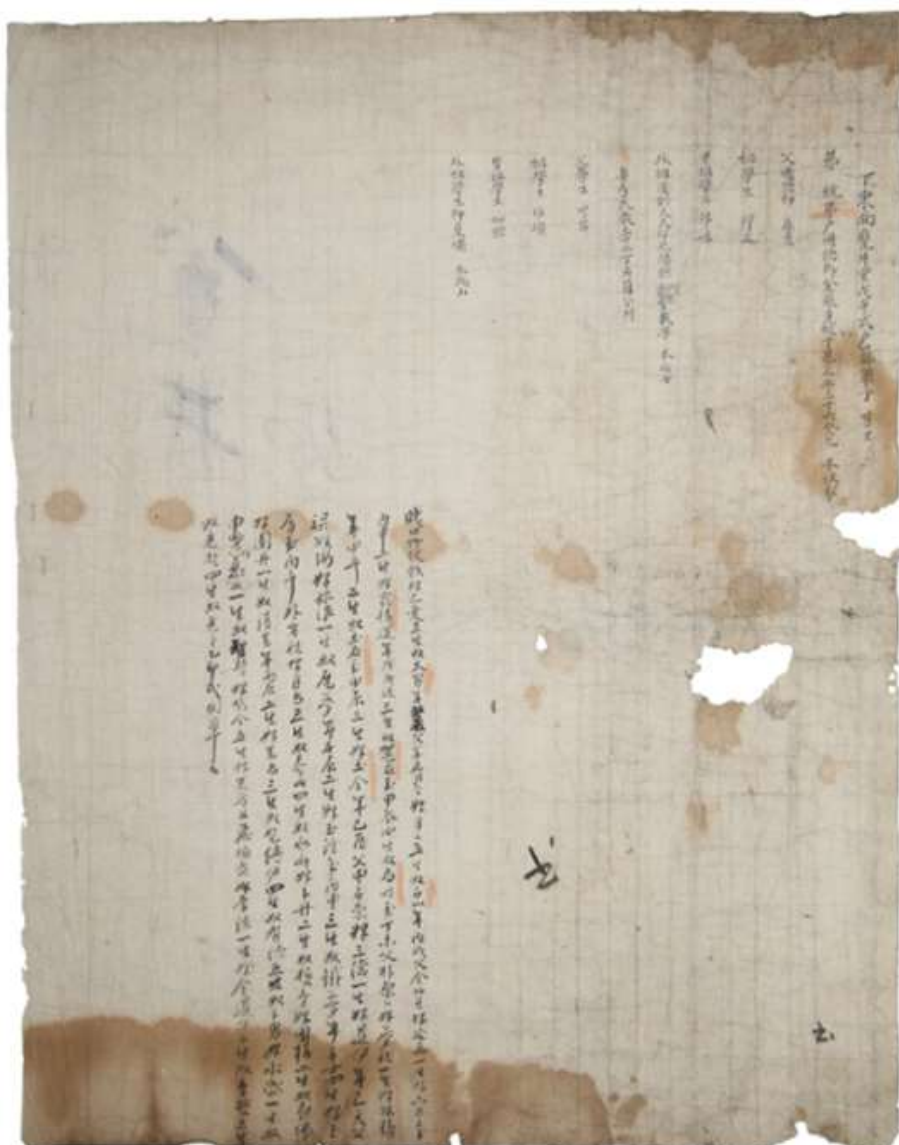
돈을 갚지 않고 버틴다면?

- 안 갚고 버티는 경우
 -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 소유권 이전을 통한 종결
 - 그런데, 무담보 거래라면? → 분쟁 발생
- 관청에 호소하는 수밖에
 - 1806-7년 김생원 댁 사내종 돌산 명의의 청원서 3건
 - 부안김씨 집안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나는 스토리
 - 김유갑-김무득 부자(父子)의 도피 행각
 - 3년이 넘도록 독촉, 청원, 상환 기간 연장, 기다림의 반복
 - 약속은 결국 깨뜨리라고 있는 것인가?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 김생원은 다름 아닌 김봉구의 할아버지
 - 소지와 호구단자에 등장하는 노비 이름을 비교하면 확인 가능
 - 김기정-김용관-김봉구로 이어지는 계보 ← 족보에서 재확인

此 正廟 基五 字應五 同正 純宗 庚辰十 二月一日 生 女曹漢振	祖如松外正廟丁未生 純宗 庚辰十 二月一日 生 女邊麟基 黃州人 子用吉 純宗 庚辰十 二月一日 生 女柳隅天 文正公序 一進士甲 瑞子白石 精府	祖瑞山柳純宗庚辰十 日辛基祖 純宗 庚辰十 二月一日 生 子麟九 純宗 甲戌生	英廟 癸巳生 正廟 辛未三 月十七日 生 辛基恩 三井廣右 龍庚坐 配全州李 祖父可昌 祖恒碩	江陵派瑞玄 孫鼎夏子 基正 字元甫 索見 子用觀 子鳳九 字文若 純宗 庚辰十 二月一日 生 正廟 辛未五 月二十六日 生 室韓平李 敦父生員 祖五祖未 福曾祖全 齋外祖金 州崔命觀 重釋
---	--	--	---	---



김정하(1795)와 김기정(1798)의 호구단자

부안김씨가 영위한 사채(私債)의 스토리

- 부안김씨의 금융 거래
 - 할아버지 김기정으로부터 손자 김봉구에 이르기까지
 - 돈을 꾸어주기도 하고 빚을 내기도 하고
- 3대에 걸친 구구절절한 이야기
 - 수표와 수기를 중심으로 재구성
 - 소지, 토지매매문기, 호구단자, 족보 등으로 보완
- 후속 연구를 통해 400여 건의 수기, 수표, 전당문기 분석을 예정

참고문헌

- 최승희(1989), 『한국고문서연구』(개정증보판), 지식산업사.
- 김재호(2001), 「농촌사회의 신용과 계: 1853~1934」, 『맛질의 농민들—한국근세촌락생활사—』(안병직·이영훈 편저), 일조각, 300-331.
- 최승희(2003), 「조선후기 고문서를 통해 본 고리대의 실태」,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신분사연구』, 지식산업사, 307-350.
- 김재호·박기주(2004), 「농촌 이자율의 장기변동, 1742~1953: 영암 지방 계 이자율을 중심으로」,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이영훈 편), 서울대학교출판부, 109-145.
- 조영준(2010), 「100년 전 서울의 일수장부를 엿보다: 조선의 금융업자」, 『조선 전문가의 일생』(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글항아리, 357-375.
- 조영준(2018), 「차용증으로 읽는 부안김씨 집안의 금융 거래」, 『우반동 양반가의 가계경영』(안승준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1-42.